

Contents

2021 여름 | Summer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07255
TeI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디자인미감 051) 515-8092

02 편집자 편지

ESG와 장애

06 포커스 1

제21대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12 포커스 2

10대 중앙일간지 장애인관련 기사 분석

- 생활, 언론 속 인권

18 포커스 3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결과보고

-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예산 편성해야

24 이슈포착 1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 유럽연합의 입법, 정책과 프로그램

42 이슈포착 2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현황과 예방 방안

48 영화평

17년만에 세워진 특수학교 이야기

〈학교가는 길〉

ESG와 장애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E(환경) · S(사회) · G(거버넌스)라는 유령이. 19세기 유럽을 배회하던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당시 주류들이 기독교 원칙에 입각한 신성동맹(神聖同盟)을 맺고 공산주의를 공공의 적으로 탄압했던 반면, 지금의 주류는 자신의 생존(Sustainability)을 위해 ESG 유령을 전략적으로 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유럽을 배회하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낙인을 찍으며 21세기 신성동맹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주류 일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연명수단의 하나로 ESG를 평가절하 하거나 그 이중성을 경계하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근대 인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ESG가 투자 전략에서 시작해, 기업경영 전략을 넘어 국가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일반에 ESG 전략을 통합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인권,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 국가’ 용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ESG가 ‘국가의 정책방향’ 및 ‘책임’과 전략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SG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경제적 수익만큼 투자대상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고 있는 지 따져보겠다는 착한 투자자들의 생각은 기업 경영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경영활동 과정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만큼 지구환경이나 이해관계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ESG경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나 구요? 아니란 증거는 현실에 차고 넘치니 그냥 트렌드가 그렇다는 대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SG는 또한 비주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비주류는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었던, 정치적 힘의 불균형이 이유가 되었던 의사결정 구조와 참여에서 배제된 결과로 탄생합니다.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또는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또는 아동은 비주류의 다른 말들입니다. 무한경쟁과 경제성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비주류는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소비자의 권리 등으로 불립니다. ESG가 트렌드가 되고 주류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류였던 그들 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주류가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즉 모든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평등과 사회·환경적 가치 포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약자는 정책 수립과 이행 절차에서 완전한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이냐구요? 트렌드를 해석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은 E(자연재해, COVID-19,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S(인권, 노동, 공정경쟁, 소비자 권리 등), G(의사결정과 참여 등) 모두에서 취약합니다. ESG가 확산되고 정책의 주류로 자리하는 것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장애 주류화의 전략적 관점에서도 쓸모가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여러분께 전달될 제44호 모니터링리포트 내용도 ESG 관점에서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슈포착〉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이슈를 다루는 유럽연합(EU)의 입법,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 학교 폭력의 피해자의 중심에 있는 장애 학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편의 글에서 유럽연합과 국내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와 원인, 폭력을 악화시키는 요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에는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정책 예산, 10대 주요 일간지의 장애관련 기사를 분석한 이슈 리포트 세 편을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모니터링 리포트를 받아보실 즈음에는 각각의 보고서 완성 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평〉에서는 주류 학교, 주류 교육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탈을 해야만 하는 장애학생의 현실, 교육 현실이 강요하는 부모의 가슴 아픈 선택, 그마저도 17년의 시간을 필요했던 특수학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결말을 아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주인공들을 담고 있습니다.

ESG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모든 구성원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은 각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고, ESG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핵심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방향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사회적 약자가 처해있는 취약한 사회·환경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마지막으로 앞선 정책과 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면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려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소비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ESG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ESG investment

Environmental

Social



제21대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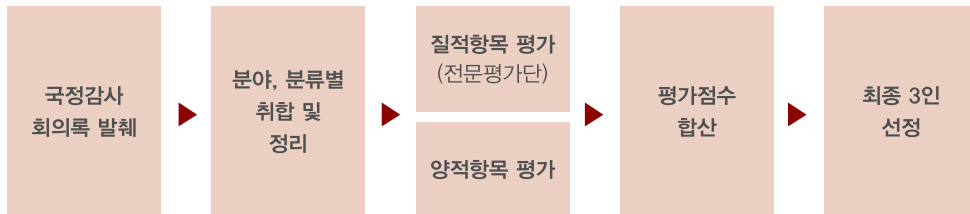
제21대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은 올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 국회의정모니터링 사업의 목표 성과 중 하나이다. 사업 계획서 상 우수의원 선정은 매 분기별(1/4, 2/4, 3/4, 4/4) 총 4번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함으로써 그 활동을 격려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함이다.¹⁾

이번 모니터링 리포트의 우수의원 선정은 1/4분기에 해당되며, 작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작년 국정감사를 선정한 이유는 시기 상 올해 1/4분기 이전인 작년 4/4분기에 해당되며, 4/4분기에는 국정감사 시기인 10월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국회의정모니터링 사업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타 회의(본회의, 예결위, 상임위, 특별위원회)보다 국정감사에서 월등히 장애인정책발언들이 많아 기초자료 활용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1. 우수의원 선정 과정



사업 전 단원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는 국회의정모니터단원 5명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단원들은 발언 발체 방법, 회의록 사전 발체 테스트를 포함하는 실 교육을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간략히 약 3주간의 21대 국정감사의 발언 발체 모니터링 결과를 분야, 분류별

1)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 2005

취합 정리하였고, 해당 자료를 자문위원(국회의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다음, 평가 결과의 합산을 통해 상위 3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제21대 국정감사에 해당되는 회의록²⁾은 국회회의록 시스템 회의별 회의록에 따르면 제382회에 해당되며, 기간은 2020년 10월 7일 ~ 2020년 10월 26일이다.

2. 평가 항목

발언에 따른 점수를 계량화하기 위해 평가 항목은 크게 질적 항목과 양적 항목으로 나눈다. 질적 항목은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으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양적 항목은 의원들의 발언 수이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 항목〉

구분	내용	배점	비고
질적 항목	구체성	0~3점	해당사항 없음 0 내용별 발언에 대한 질적수준에 따라 1~3점 부여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양적 항목	발언 수	1건 1점 2건 2점 3건 이상 3점	발언 수의 빈도를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하여 배점 부여

양적 항목의 경우, 발언 수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하여 발언 수 빈도의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배점을 부여하였다.

3. 결과분석

3-1. 일반적 현황

제21대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 현황 결과를 보면,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 수는 총 87명이며, 발언 수는 총 195건으로 발언의원 1인당 평균 2.24건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현황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149개로 이중 발언 발생 회의록은 63개(약 42%)로 회의록당 약 3개의 발언이

2) 국회회의록 회의록 검색(<http://likms.assembly.go.kr/record>)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언의 분야를 살펴보면, 복지 일반에 대한 발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접근/이동권 분야(34건), 고용분야(28건) 순이었다.

회의종류	의원 발언 현황			회의 현황			
	정책 발언수	발언 의원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수	발언발생 회의록수	발언 발생빈도	발생 회의록당 발언수
국정감사 (21대)	195	87	2.24	149	63	42.2%	3.09

국정감사	분야 발언 수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문화 체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계
21대	47	11	28	21	14	34	17	19	3	1	195

3-2. 질적 항목 평가 결과

195건의 평가 대상 발언에 대한 질적 항목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의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사업 발언점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발언에 따라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질적 항목 평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언 당 질적 항목 평가 점수 결과〉

구분	빈도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질적 항목 점수	87	4.3	10.7	7.49(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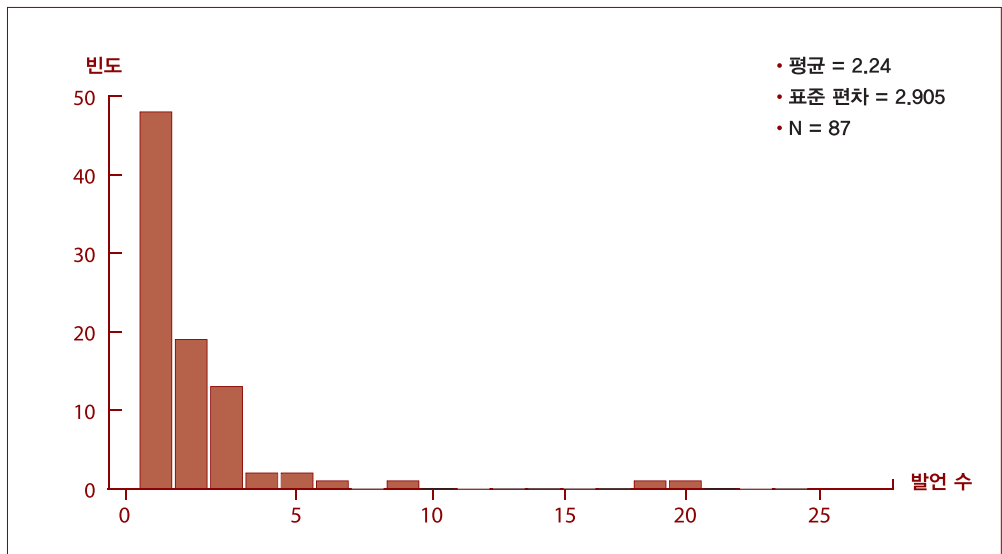
3-3. 양적 항목 평가 결과

양적 항목 평가는 기존의 질적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질적 항목 평가는 발언에 따른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 수의 양적측면은 고려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건이 발언을

한 의원의 평균점수와 10건의 발언을 한 의원의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이 두 의원의 발언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정 배경에서도 밝힌 정책 참여도와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 항목에 의한 평가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적 항목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의 양적 항목은 정책 참여도 및 적극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써 ‘발언 수’를 활용하였다.

〈의원 발언 수 분포〉



양적 항목인 발언 수의 빈도를 보면, 한 의원이 최소 1건부터 최대 20건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 수의 빈도를 4분위³⁾로 구분하여, 발언 수 빈도의 구간에 따라 1~3점까지 차등적으로 가점을 부여하였다.

발언 수의 빈도를 4분위로 구분한 결과, 1~2사분위(~50%) 1건, 3사분위(~75%) 2건, 4사분위(75%~) 3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건은 가점 1점, 2건은 가점 2점, 3건 이상은 가점 3점을 부여하였다.

3) 분위수(Quantile)은 자료 크기 순서에 따른 위치값으로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거나, 산포가 큰 상황에서 분위수가 대푯값으로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분위수는 100분위, 10분위, 4분위가 있다. 이중 4분위는 크기 순서로 나열한 자료를 4등분한 관측값을 의미하며, 1사분위는 25%, 2사분위는 50%, 3사분위는 75%, 4사분위는 100%이다.

발언 수	발언 의원 빈도 수	퍼센트	가점
1	47	54.0	1
2	19	21.8	2
3	13	14.9	3
4	2	2.3	3
5	2	2.3	3
6	1	1.1	3
9	1	1.1	3
18	1	1.1	3
20	1	1.1	3
총 합	87	100.0	

4. 최종 결과

앞선 평가에 따라 질적 항목 평가 점수와 발언빈도에 따른 가점을 최종적으로 합산한 결과 최종 3인을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순위	발의자	발언수	평균점수 (질적 항목)	발언빈도에 따른 가점	총점
1	최혜영	20	9.9	3	12.9
2	이종성	9	9.7	3	12.7
3	김예지	18	9.6	3	12.6

맺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4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비록 전체 의원 대비 1.3% 수준이나 이들 모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정책관련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본인의 소임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의 법과 제도를 위해 노력 해주길 바라본다.

10대 중앙 일간지 장애 관련 기사 분석

— 생활 속 인권, 언론 속 인권 —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국내 10대 중앙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지면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기사는 제외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2월 ~ 4월, 3개월간으로 진행하였으며 “장애”, “발달” 등 장애 관련 키워드를 선정해 활용하였다. 분석은 10대 일간지가 장애 관련 기사를 보도한 내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10대 일간지의 장애관련 기사가 다루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내용을 ‘노동/취업’, ‘교육/학습’, ‘접근성/편의’, ‘스포츠/레저’, ‘문화/관광/예술’, ‘보건/재활’, ‘소득/생계’, ‘자립/탈시설’, ‘제도/행정’, ‘인권/권리’, ‘인물/인터뷰’, ‘자선/봉사’, ‘기타’ 등 12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조사기간 2월~4월동안 10대 일간지가 보도한 장애이슈는 총 511건으로 인권/권리가 7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접근성/편의 57건, 자원/봉사 54건, 기타 52건, 인물/인터뷰 51건, 보건/재활 48건, 문화/관광/예술이 47건, 노동/취업이 44건, 교육/학습이 22건, 제도/행정 21건, 자립/탈시설 17건, 소득/생계 1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레저가 6건으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보도되었다.

2~4월 장애 관련 언론 보도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2~3월에는 장애아동 학대,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등의 문제가 언급된다. 아동학대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유치원, 보육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행해지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설 내 인권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였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장애인의 탈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당사자에 따라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의견임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져야

〈장애 관련 기사 내용(2021. 2~4)〉

구분	경향 신문	국민 일보	동아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 레	한국 일보	계
노동 취업	6	1	7	6	7	4	2	4	4	4	44
교육 학습	5	1	2	2	1	3	1	2	4	1	22
접근성 편의	8	5	8	3	4	11	4	0	8	6	57
스포츠 레저	1	0	1	1	0	2	0	0	0	1	6
문화 관광 예술	2	6	8	1	9	7	2	1	7	4	47
보건 재활	5	5	6	3	8	7	2	3	7	2	48
소득 생계	1	2	0	3	1	1	2	0	1	4	15
자립 탈시설	4	1	2	1	2	2	0	0	3	2	17
제도 행정	5	1	1	1	6	1	0	1	0	5	21
인권 권리	20	3	4	1	14	8	6	2	10	9	77
인물 인터뷰	2	12	3	5	2	5	6	3	10	3	51
자신 봉사	3	18	5	2	3	6	5	3	5	4	54
기타	10	5	3	4	7	6	6	1	4	6	52
계	72	60	50	33	64	63	36	20	63	50	511

한다. 지역 내 그리고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에 사회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시설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여러 번 중복 보도하여 사회에 문제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2~3월은 생활 속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4월에는 언론 속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다른 달보다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그리고 이 때가 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비하표현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보도된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 오면서 일상 속의 차별 용어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만 특히 정치권의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에서는 4월 19일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1면에 실렸으며, 같은 날 ‘협을 이용하는 정치인에게’라는 칼럼을 통해 정치인의 언행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 언론인을 옹호하는 발언 속에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과.....”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국회의원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을 했지만 전 법무부 장관은 국어사전에 ‘외눈’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외눈은 하나의 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에는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말이나 글 속에서 단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 또는 글에 따라 부여되는 의미가 달라진다. 전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외눈’은 편향성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했다. 이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써 사용한 것으로 ‘외눈’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폄하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과 달리 양 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언급에서 보여지듯이 양 눈이 정상이고 외눈은 비정상이라는 듯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도 비정상이라는 수식으로 이어진다. 엄연한 장애 비하 표현으로 정부의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된 언행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장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2~4월 기사 내용 중 장애인의 인권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장애 비하표현에 대해 자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중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왜곡하는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2~4월동안 보도된 기사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기사 수는 총 111건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장애인의 인권과 연결됨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단체에서도 언론과 사회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는 다양한 단어나 속담, 그리고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앞서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장애를 비하하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하하는 표현을 듣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고 장애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 문둥병자, 소경, 불구자, 앉은뱅이, 혈루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등을 고치셨다.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 마음밭에 진리를 뿌리다, 국민일보, 2021.03.27.)
- 2019~2020년 겨울 프랑스 전국의 대중교통을 마비시킨 장기 파업도 자전거 확산에 도움을 주었었는데, 코로나까지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홍식의 세계속으로] '세계의 자전거 수도' 꿈꾸는 파리, 세계일보, 2021.03.09)
- 김연경은 오른손에 빙어리 장갑처럼 테이핑을 하고 나왔다.
(엄지 다쳐도 '엄지 척', 조선일보, 2021.03.25.)
- 3월의 광란이 막을 올린다.
([바람개비] 3월의 광란, 동아일보, 2021.03.16.)
-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에게 찾아온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이우진의 햇빛] 봄 날씨는 알레그로 템포로 온다, 한겨레, 2021.03.22)
-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깜깜이' 코인 상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깜깜이 코인 상장... '잡코인 무더기 거래' 부른다, 동아일보, 2021.04.23)
- 많은 이는 트랜스젠더를 비정상, 심신장애자 또는 이등 인간으로 취급한다.
([강남순의 낮꿈꾸기]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린 이들 트랜스..., 서울신문, 2021.03.16.)
- 매독균이 태아에게 퍼지면 기형아가 될 수 있다.
(물건처럼 반쯤당한 아이 中 '호적 없는 대리모 아이', 서울신문, 2021.02.0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여러 단체에서 꾸준히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는 ‘문둥병자’, ‘맹인’, ‘병어리’ 등이 있다. 기사에 인용문을 사용하건 직접 기사를 작성하건 ‘문둥병자’는 한센인으로 ‘맹인’, ‘소경’은 시각장애인, ‘병어리’, ‘언청이’는 언어장애인 등으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도 표현하는 건 ‘교통마비’, ‘눈먼’, ‘깜깜이’, ‘광란’ 등이 있고 예전부터 사용해온 표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비하표현이 관용적 표현 또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얕은뱅이책상’, ‘병어리장갑’이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좌식 책상’, ‘손모아장갑’ 등이 있는데 굳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 외에도 언론에서 자주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장애자’이다. ‘장애자’가 아닌 ‘장애인’이다. 1989년에 명칭이 바뀌었고 90년대에 언론에서 퇴출된 용어이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향상을 생각한다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라고 명명하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기형아’라고 한다. 하지만 ‘미숙아’, ‘기형아’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굳이 구분을 해야 한다면 ‘미숙아’ 대신 ‘조숙아’를, ‘기형아’를 ‘장애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사회에는 장애인을 비하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기사가 있는 반면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사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훨씬 많다. 그리고 매년 4월 장애인의 날 전후에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증가한다. 평소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 보도하는 언론이 4월에만 반짝 정신을 차린다.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 4월 한 달만 장애인 인권을 얘기하고 비하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언급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보도가 과연 대중에게 얼마나 적용될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초중고 학생과 극히 일부의 직장인만이 받고 있다. 그 외에는 장애인식 교육을 접할 수 없다.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장애인식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왜곡된 표현 바로잡기〉

	왜곡된 표현	올바른 용어
1	장애자, 불구자	장애인
2	문둔병자	한센인
3	교통마비	교통정체, 교통체증
4	앉은뱅이, 절름발이, 곱추	지체장애인
5	언청이, 병어리	언어장애인
6	소경, 맹인, 깜깜이	시각장애인
7	기형아, 미숙아	장애아, 조산아

따라서 언론의 보도내용뿐만 아니라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의 비하표현이 대두되었을 때도 언론은 물론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중립을 지켜야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사회가 차별, 배제 등 인권에 침해되는 행위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 속 인권과 언론 속 인권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에서 사용하는 비하표현은 사회구성원의 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에서도 언론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언론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며 행동하고 사회구성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이 뒷걸음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결과 보고서

—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예산 편성 해야 —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2021년은 종합계획 4년째 되는 해이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어 해마다 장애인예산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액됐다. 예산이 장애별 특수성을 개개인의 고충으로 해소하려 양적 확대로만 치우친 건 아닌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밀한 실무형 정책인지, 코로나 시대에 소외되고 돌봄에서 배제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앙정부 54곳 소관 부처의 2021년 예산서를 수집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장애인예산을 발췌하였다. 발췌된 장애인예산을 부처별, 연도별로 증감 추이를 분석하였고 성결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주목할 만한 장애인예산 세부사업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규모

〈표-1〉을 보면, 2021년 중앙정부 총예산은 558.0조 원이다.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췌한 장애인예산 규모는 6조 4,550억 원이다. 작년 대비 1조 3,81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0.17% 증가한 약 1.16% 수준이다. 장애인예산이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1%를 넘으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4만 명) 대비 등록장애인 인구(262만 명) 비율은 5.1%이다. 또한, 국회 예산처 분석보고서 중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GDP

〈표-1〉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중앙정부 예산규모 (2020-2021)				장애인 예산 비율 (2020-2021)			장애인 예산규모 (2020-2021)			
중앙정부 예산	'20년	512조 3,000억	△ 45조 7,000억 (△ 8.9%)	중앙정부 예산	'20년	0.99%	△ 0.17%	'20년	5조 732억	△ 1조 3,818억 (△ 272 %)
	'21년	558.0조			'21년	1.16%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	'20년	167.0조	△ 180 조 (△ 10.8%)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	'20년	3.04%	△ 0.45%	'21년	6조 4,550억	
	'21년	185.0조			'21년	3.49%				
보건 복지부 예산	'20년	82조 5,269억	△ 7조 497억 (△ 8.5%)	보건 복지부 예산	'20년	4.60%	△ 0.63%			
	'21년	89조 5,766억			'21년	5.23%				

(*출처 : 열린재정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출처 : 정책모니터링센터 예산발체 자료)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이다. 하지만 한국은 12.2%이다. OECD 38개국 중 35위(2019년 기준)로 하위권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장애인예산의 OECD 국가별 기준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임을 알려주는 통계이다.

■ 2021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 비율

본 센터에서 발체한 2021년 장애인예산은 약 6조 4,550억 원이다.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로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4조 7,092억 원(74.01%) 규모로 가장 많은 장애인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6,791억 원(10.67%), 국토교통부 4,622억 원(7.26%), 국가보훈처 3,249억 원(5.11%), 문화체육관광부 1,174억 원(1.85%), 교육부 699억 원(1.10%) 순이다. 보건복지부 등 6곳에 편성된 장애인예산 비율이 발체한 장애인예산 총액의 98.57%에 이른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주거, 문화, 체육 등 각각 해당 소관 부처별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 예산은 장애인의 기본 소득보장과 일상생활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 지원 예산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다른 소관 부처와 비교하면 장애인예산 편성비율이 높은 이유다.

〈그림-1〉 2021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 비율



■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성격별 분류

다음으로 장애인예산의 질적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성격별 분류를 하였다. 장애인예산을 정책의 성격 분야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고용 취업, 이동 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나누었다.

2021년도 장애인예산은 8가지 전 분야에서 증가율을 보였다. 그중 소득보장 분야가 7,945억 원 증가한 1조 8,381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장애인 일 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이 향상된 것이 그 원인이다. 자립 생활 부분은 1조 5,196억 원이다. 장애인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 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 뒤를 이어 고용 취업 8,349억 원, 장애인시설 7,264억 원, 의료재활 6,654억 원, 기타 6,290억 원, 문화체육정보 1,324억 원, 이동 편의 1,087억 원 순이다.

〈표-2〉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단위 : 천원)

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비율	예산비교(전년도)	증감률
소득보장	967,722,425	1,043,665,181	1,838,193,741	28.5%	△ 794,528,560	△ 76.1%
자립생활	1,018,957,000	1,322,218,200	1,519,622,000	23.5%	△ 197,403,800	△ 14.9%
고용취업	504,665,314	733,213,577	834,996,211	12.9%	△ 101,782,634	△ 13.9%
장애인시설	563,378,644	680,211,000	726,480,000	11.3%	△ 46,269,000	△ 6.8%
의료재활	589,998,807	560,273,013	665,448,492	10.3%	△ 105,175,479	△ 18.8%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단체지원	474,474,932	525,755,238	629,098,856	9.7%	△ 103,343,618	△ 19.7%
문화체육정보	86,762,150	127,434,517	132,499,217	2.1%	△ 5,064,700	△ 4.0%
이동편의	64,284,495	80,481,390	108,751,821	1.7%	△ 28,270,431	△ 35.1%
합계	3,302,521,342	5,073,252,116	6,455,090,338	100.0%	△ 1,381,838,222	△ 2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 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인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보장(28.5%), 자립 생활(23.5%), 고용 취업(12.9%)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6.2%)

■ 2021년 눈여겨볼 장애인예산 세부사업

증액된 예산 중 눈여겨 볼만한 세부사업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다른 주요사업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작년 대비 15.4%

증가한 1조 5,066억 원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5천 명 늘어난 9천 명이다. 활동 지원사 가산급여는 1,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다. 특히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또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전년 대비 180억 증가한 1,595억 원 책정되어, 12.80%가 증가하였다.

20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 반영된 재활병원 건립은 107.14% 75억 증가한 145억 원이다.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도 주목해야 한다. 2021년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2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 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 질환자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 친화 산부인과 8개 지정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운영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작년 대비 10.5% 531억 증가한 5,804억 원이다.

발달장애는 한사람이나 가족이 책임질 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일생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로 가야 한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주간 활동 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활동 참여지원으로 전담인력을 배치 즉 일대일 서비스를 위한 주간 활동 가산급여가 도입되었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바우처제공 등으로 작년 대비 총 607억 원 증가한 1528억 원을 편성하였다. 65.98% 증액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예산은 작년과 같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할 지점이다.

■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보편적 예산 편성 해야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약 6조 4,550억 원으로 총예산 558.0조 원의 약 1.16%이다. 현 정부 들어 장애인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종합계획 수립 4년 차인 올해 드디어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이 1%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에서 OECD 회원국 평균(20.0%)에도 미치지 못하는 12.2%로 38개국 중 35위(2019년 기준)인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장애인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경우 74.01%에 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10.67%), 국토교통부(7.26%), 국가보훈처(5.11%), 문화체육관광부(1.85%), 교육부(1.10%) 순이다. 이 6곳 소관 부처의 장애인예산 비율이 중앙정부 총 장

애인예산의 98.57%를 차지하고 있다. 몇 년간 장애인예산이 검색조차 되지 않는 소관 부처는 14개 부처나 되며, 검색되더라도 1% 미만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다. 즉 부처 간 장애인예산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장애인 문제를 복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보편적인 장애인 정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4년 차인 올해는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장애인예산의 양적 증가는 발견되나,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한 그 서비스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종합계획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장애주류화 관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모든 소관 부처 예산서에 보편적으로 장애인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해 본다.

EQUALITY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the EU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 유럽연합(EU)의 입법, 정책과 프로그램

일러두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아동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회원국은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했고, 대부분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다. 유럽연합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EU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장애아동들이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유럽연합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아동 폭력 예방 관련 EU 및 회원국의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폭력의 정도와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본 보서는 2015년에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가 작성한 것으로 관련 활동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존엄(I)' 및 '평등(III)' 장에 해당하는 개인의 온전함에 대한 권리(3조), 아동의 권리(24조), 장애인의 통합(26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보고서의 개요 부분을 번역해 것이다. <편집부>

보고서 개요

장애아동은 기본권을 누리는 데 있어 커다란 장벽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종종 사회에서 배제되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활한다. 장애아동은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이들에 대한 성적·

신체적·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낙인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가 수행한 장애아동 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 형태, 원인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록과 통계에 근거한 조사로, 28개 EU 회원국의 장애아동 폭력을 다루는 법률 및 정책 제공,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검토하였다.

또한, 개별 인터뷰는 13개 EU 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그리고 영국이다. 이들 나라에서의 인터뷰는 통해 폭넓은 지리적 특성과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및 데이터 수집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준 구조화 된 질문 총 132개로 이루어진 설문문이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 보건 전문가, 교육 전문가 및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단체, 부모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아동 인권 분야에서 일하는 NGO, 국가인권기구와 독립적인 고충처리 담당관같은 다양한 인권 기구들이다.

장애아동 폭력 : 기본권 문제

국제적 및 유럽의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는 장애아동 폭력은 정책 입안자와 현장 실무자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동권리협약(CRC)과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나는 특별히 아동과, 다른 하나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모든 EU 회원국은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했으며, 25개 회원국은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다. 2010년에는 EU 또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서명했는데, 이는 협약이 현재 EU 법 질서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으며, 모든 EU 입법절차와 관행은 협약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유엔 협약의 조약 기구는 몇 개의 일반 논평과 당사국 보고서의 최종견해에 장애아동 폭력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회원국들 또한 폭력을 기소할 때나 폭력을 다루기 위한 국가 정책을 정의할 때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유럽연합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장애

인권리위원회는 EU가 폭력, 학대, 착취와 싸우기 위해 모든 법률, 정책 및 전략에서 장애 주류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아동폭력은 대부분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입증하기 어렵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다양한 장애 정의, 특히 어린이들 사이의 장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부족, 국가마다 상이한 장애 유발에 대한 데이터 수집 접근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애아동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장애에 관한 세계 보고서는 2004년 전세계 질병 부담 연구¹⁾를 인용하여 0-14세 아동의 장애(중간, 심각한 수준) 유병률을 5.1%로 추정한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의 약 9천 3백만 명에 달한다. EU에는 장애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일된 자료가 없다.

장애아동폭력 정도에 관한 자료는 적지만,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아동 학대가 만연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니세프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신체적·성적 폭력은 물론 방치될 가능성이 3~4배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네덜란드, 아동권리 NGO 대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처리되는 사례들은 실제 숫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체코, 임상심리학자)

장애아동은 학교, 가정 또는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발달 단계, 제한된 법적 능력,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 등으로 성인에 비해 모든 상황에서 취약하다. 아동이 손상을 입을 때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장애아동은 폭력의 비율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이 경험한 것과는 다른 장애로 인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폭력, 제약, 세신(샤워, 목욕) 중 성학대,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폭력, 약물 과다 복용 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특히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에 취약하여 그들의 삶이 황폐화될 수 있다.

1)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이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및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를 계량화한 개념이다

"장애아동은 가장 낙인찍히고 소외된 아동에 속하며, 사회에 의해 무시되고 부정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폭력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 public authority representative)

사회적 고립과 편견, 가정, 돌봄 센터 및 시설 등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장애아동은 폭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는 종종 아이들을 '쉬운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폭력을 고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그들의 항의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민족, 이주자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위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은 장애아동의 특정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때 증가한다. 이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가능 또는 훈련된 전문가 부족과는 관계없다.

"당신이 저소득층 흑인 소년이고,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그렇지 않은 부유한 지역의 소녀보다 학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168배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국, 국가인권기구 소속 응답자)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피해자에 맞추어진 아동보호 서비스나 계획에서 종종 제외된다. 이는 장애아동을 아동보호 서비스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내몰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종종 이를 고려하지 않는 몇몇 조직이나 다른 당국의 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공유의 관점에서 네트워킹이나 사례 회의, 행동지침의 조정 없이, 세 개의 기관이 병렬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국가인권기구 소속 응답자, 크로아티아)

아동보호시스템, 고발 메커니즘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종종 장애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아, 지원 요청, 학대 신고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아동에게 또다른 장애물이 된다. "통합 아동보호시스템의 조정과 협력"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가 아동보호시스템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주요 결과 및 FRA(유럽연합 기본권 기구) 견해

FRA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EU 전역에서 확대 및 배척으로부터 장애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 행동 영역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포괄적인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장애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들은 전체적이고 범 분야를 아우를 때 가장 효과적이다. FRA 연구에 따르면, 가족,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시설에서 일반 대중까지 아동의 삶에서 역할을 하는 모든 행위자를 참여시키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아동의 성, 사회 경제적 지위, 민족, 또는 이주민 여부와 같은 요소들은 장애와 결합되었을 때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위험을 다각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뛰어난 서비스, 다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 많은 응답자들은 조기개입 시스템이 종종 장애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아,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다양한 욕구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종종 장애아동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신체적인 접근 및 직원의 필요한 기술이나 훈련 부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아동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서비스 및 조치는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직면한 장벽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애아동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장애아동 폭력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접근을 채택했다. 일부 회원국은 아동보호 정책에 장애아동 보호를 포함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책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또다른 회원국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모든 아동폭력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안했다. 이와 같은 일반정책들은 장애아동이 겪는 폭력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정책이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점,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아동을 세분화하여 별도의 정책을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FRA 견해 ■

EU 회원국들은 통합된 접근방식을 통해 장애아동 폭력을 다루어야 한다. 아동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책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 더 높은 폭력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조치, 그리고 접근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의 아동보호 시스템의 일부이며, 폭력의 희생자인 아동을 위한 모든 조치와 지원 서비스가 연령, 성별 및 장애 민감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성별, 민족성,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이 아동에게 폭력의 위험도를 높이는 다른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방 프로그램에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 인식 개선, 책임 있는 육아 및 가족 지원 교육, 일시 돌봄교대 프로그램(respite programmes) 등이 포함된다.

EU 회원국들은 공적 당국이 장애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모니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적 당국에는 국가 인권기구는 물론, CRPD 제 33조 2항에 따라 구축한 적절하고도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정치적 틀 향상

설문 응답자들은 아동 폭력을 다루고, 아동범죄를 제대로 기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장애아동을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점,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 연령별로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불만처리 메커니즘의 부족, 범죄 신고 저조 등이 이유다.

FRA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장애와 나이를 폭력 범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EU의 몇몇 규정은 폭력으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착취와 아동 포르노물 방지에 관한 지침(성적 학대 및 착취 방지 지침, 2011/93/EU) 및 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최소 기준 수립 지침(피해자 권리 지침, 2012/29/EU)은 아동피해자 지원, 범죄 신고 및 범죄자 기소를 포함하는 형법 조항의 일정 수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13개 EU 회원국만이 형법에서 장애에 기초한 편견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편견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혐오에 기반한 범죄를 차별화 한다. 대부분 편견을 범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아동 권리 정책과 장애인 정책 두 가지 정책 문서(아동의 권리와 유럽 장애 전략에 관한 EU 의제 2010-2020)를 각각 채택했다. 둘 다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아동권리 전문가 한 명과 장애인 권리 전문가 한 명으로 구성된 국가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그룹을 설립하였다. 정보, 경험, 모범사례에 관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것이다. EU는 CRPD의 당사자로서 능력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CRPD 장애인권리위원회는 EU의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장애전략이 장애소년과 소녀의 권리를 다루고 주류화 할 것을 특별히 권고했다.

유럽의회에는 아동 및 장애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서로 구별되는 그룹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아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현안을 다루는 토론과 조치에 있어 그렇다.

■ FRA 견해 ■

EU 회원국은 피해자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사법, 비사법적 시정 메커니즘에 완전하게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통해 사건고발 및 기록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정 메커니즘은 연령과 장애를 고려하여 적절한 편의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국은 숙련된 직원이 장애아동 폭력사건의 조사와 사후 조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 권리 지침이 요구하는 개별평가 기간도 포함된다.

회원국은 아동의 성학대, 성착취, 아동 포르노 방지 지침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나이와 장애를 성폭력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편견을 조장하는 다른 형태의 요소와 동등하게 장애를 포함하고, 편견에 기반한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FRA Focus 논문(모든 증오 범죄 희생자에 대한 동등한 보호 - 장애인 사례)에서도 이를 제안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아동권리에 관한 EU 의제와 기타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검토 시, 장애아동 전략에 기초해 포괄적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U 장애전략(2010-2020) 이행상황 검토에는 폭력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 증진 및 충족을 위한 명시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조정 및 전담조직 지정 보장

응답자들은 장애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보호에 관련된 단체를 하나로 묶는 총괄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아동, 가족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협력은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정책의 실행과 서비스 제공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서비스는 주로 다양한 행위자들 의해 개발된다.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조율된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협력 부족이 종종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공식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없거나 실제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식화된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 곳에서도, 종종 폭력의 특정한 위험과 더 큰 취약성에 노출된 장애아동 현안을 다루지 못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또한 장애아동의 잠재적 위험상황과 학대 사례를 적절하게 다룰 역량과 지식이 부족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경찰, 사회, 보건 및 교육 담당 직원과 같은 전문집단 대부분이 통일된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아동 학대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된 이해조차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 FRA 견해 ■

EU 회원국은 아동권리협약(CRC) 일반논평 9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동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자(공공, 민간 포함)간의 적절한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국가수준의 전담조직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직은 CRPD 33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회원국은 국가 정책, 조치의 이행을 감독하고, 폭력 발생 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향상시키고, 위험 상황을 평가할 때 전문가 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 조정 메커니즘 네트워크를 지역 수준에서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에는 보건, 사회, 교육분야의 전문가, 사법 당국, 사회복지사, 피해자 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실무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아동, 그 가족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서간 칸막이 대응을 방지하고 장애아동 서비스 조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회원국은 예를 들어 책임, 절차 및 Referral 메커니즘(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장애아동 폭력을 예방 및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간 운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협력을 촉진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무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개선, 다양성 촉진 및 고립 방지

장애아동 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응답자들이 파악한 폭력의 원인은 편견과 장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에 기초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편협함에 뿌리를 둔 전문가 또는 개인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와 고립은 다양한 환경에서 장애아동을 폭력에 보다 취약하게 만든다. 그들은 장애아동의 제도적 고립은 비장애인과의 상호소통을 제한하여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이해를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민족성, 이주민 또는 성별 때문에 장애인이거나 다른 취약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폭력의 위험 증가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 FRA 견해 ■

EU 회원국과 EU는 CRPD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며, 편견에 맞서 장애아동의 사회적 낙인 및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은 일반 국민, 부모, 아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동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관련 부처, 국가인권기구, NGO, 장애인단체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기관이 이러한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아동중심 예방 조치 및 당사자 참여 촉진

연구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주류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장애아동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위험을 식별하고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에서 장애아동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응답자들은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장애아동의 이해부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한다. 많은 장애아동들은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어떤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어린이와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응답자들은 장애인단체, NGO,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행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믿는다. 장애아동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배제되고 접근 가능하지 않는 일반 서비스로 인해 그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폭력 예방의 핵심이고 그들에게 폭력사건을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FRA 견해 ■

EU 회원국은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협력해, 장애 아동의 자신감과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이 위험한 상황과 부적절한 행동을 식별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조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성적 행동과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구별할 수 있도록 관계와 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회원국은 장애와 관계없는 폭력, 왕따 또는 일반 아동 권리 현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고 성별, 인종 및/또는 이주민과 같은 기타 특성에 민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회원국은 장애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대표 및 가족 조직을 통해 표현되고, 이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정책, 서비스 및 조치의 설계, 이행 및 모니터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예를 들어 장애 아동과 그 대리인을 포함하는 자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협의 메커니즘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은 가정 환경에서도 발생한다. 응답자들은 장애 아동의 가족과 보호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로과 탈진, 경제적 고통, "혼자 남겨진" 느낌을 폭력 촉발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장애 아동의 가족과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 부족한 지원을 강조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은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폭력에 대한 노출과 대응이 빈곤의 위험, 이주자 또는 소수 민족 출신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아동의 개인 또는 가정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응답자들은 종종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언급한다. 응답자들은 빈곤선 아래에 사는 가족들이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지원을 받을 기회도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수치심과 실망감은 때때로 가족 구성원, 특히 아동의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장애는 금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피로 또는 탈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 FRA 견해 ■

EU 회원국들은 아동 보호 서비스에 유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고, 장애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서비스는 대상 정보, 오리엔테이션, 상담, 동료 지원 및 훈련뿐 아니라 장애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는 직간접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임시 돌봄 프로그램(돌봄 노동에 지친 가족 또는 보호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피로로 인한 탈진이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아동 보호 서비스(예: 포괄적 가족 중심 지원 서비스 및 위험의 조기 식별)를 통해 장애 아동이 직면한 다중 위험을 인식하고 다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아동 및 성인)을 대변하는 단체의 지원을 포함하여, 이주자 및 한부모 가족, 빈곤 또는 기타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 농촌에 거주하는 가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이용가능한 지원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포용적인 교육과 참여 보장

응답자들은 장애아동이 또래들과 선생님들로부터의 학대에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주류 학교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의 부족, 부적절한 교사 훈련, 그리고 강력한 예방 메커니즘의 부재를 방증한다. 응답자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배척이나 고립과 같은 좀 더 교묘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연구는 회원국들이 학교 내 괴롭힘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장애아동을 보다 더 강력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RPD의 24조는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겠다는 각 당사국의

분명한 약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장애 아동을 위한 완전하고 평등한 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들은 통합교육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지적했고, 주류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려면 단순한 통합이 아닌 진정한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FRA 견해 ■

EU 회원국들은 학교들이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초기 적대 징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단 괴롭힘 방지 정책과 절차는 특히 장애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회원국은 모든 교사, 지원 담당자 및 기타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 환경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 사례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장애아동에 특히 초점을 맞춘 아동의 권리를 교사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폭력을 인식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적절한 훈련의 결여 또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등 기구, 국가 인권 기관 및 아동 옴부즈맨을 포함한 국가 인권 메커니즘은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아 교육에 있어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폭력 사례, 주류 학교 접근 거부 사례, 장애아동 괴롭힘 사례를 조사하고 추적해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아동 및 성인)을 대표하는 조직은 장애 아동과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여 교육에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학교에서 자기 옹호자와 롤모델이 수행할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 학교 당국에 다양한 형태와 범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정 지원 욕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탈시설 노력의 진전과 시설 모니터링 강화

서로 다른 시설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정확한 어린이 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약 150,000명의 어린이가 유럽 전역의 생활시설

에서 살고 있다. 회원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설기반 관리 시스템에서 가족기반 관리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장애아동의 시설화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시설화는 아동이 방치와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일부 응답자들은 시설화 자체를 폭력의 한 형태로 본다. 또한 회원국의 생활시설 거주자 관리 인력에 대한 조사가 항상 모든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빈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응답자들은 폭력과 방치는 시설에서 쉽게 은폐될 수 있다고 느꼈다. 이들은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엄격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시설에 대한 조사는 종종 체계적이지 않고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대응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관의 학대 또는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는 후에만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특정 모니터링 기관이 역량이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응답자들이 강조하는 다른 과제로는 인력의 노동환경의 문제, 그로 인해 탈진과 부적절하고 산발적이며 의무적이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2014-2020년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입법 패키지는 CRPD 준수와 탈시설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빈곤과 차별을 퇴치하는 기준(회원국이 ESI 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위 '전제 조건')은 특히 중요하며, "시설에서 지역사회 기반 관리로의 전환 조치"를 포함한다.

■ FRA 견해 ■

회원국은 UN 대안적 아동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아동(특히 3세 미만)을 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은 장애 아동의 신속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에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원국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EU구조투자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회원국은 시설과 기타 폐쇄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여 방치, 학대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 방법에 있어 특히 탈시설화(일부 EU구조투자기금을 통해 지원됨)가 중요하다. 모니터링은 독립적이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정기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적합한 도구 개발, 적절한 자원 할당 및 인적 자원 역량 향상

이 연구는 기존의 국가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응답자들은 너무나 훈련되지 않은 직원, 과도한 업무, 자원 부족 및 문제 있는 노동환경을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장애아동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전문적인' 인력 외에도,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은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장애아동의 권리, 수단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식별 절차, 장애아동 폭력 대응 및 고발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응답자들은 법률과 정책의 이행에 있어 주요 과제로 실질적인 지침과 도구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침과 도구는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EU는 2013년 다프네를 대체한 권리, 평등 및 시민 의식 프로그램(2014-2020)과 같은 EU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 퇴치 분야를 포함한 연구, 훈련, 지침 개발 및 모범 사례 공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자금조달 계획의 긍정적인 영향이 국가 수준에서도 가능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FRA 견해 ■

EU 회원국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전문가가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적절히 지원하고,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 프로토콜 및 훈련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아동 폭력 예방에 관한 기존 법률과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는 장애 아동, 성인 및 가족을 대표하는 조직과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 이행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회원국은 장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과 노동환경을 검토하여 해당 전문가가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장애 아동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체계적인 욕구 평가에 기초해야 하며,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스트레스 관리, 폭력 인식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청각, 인지, 언어, 지적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함하여 아동과 접근하기 쉽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훈련에서 다루어야 한다. 교사 및 기타 교육 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 어린이 및 보호자를 위한 전문 및 일반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장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실무자 및 보건 및 교육 전문가와 같은 일반 서비스 직원을 위한 지침과 툴킷은 폭력을 의심할 때 취해야 할 책임, 예방, 의뢰 및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EU 구조투자기금 및 권리, 평등 및 시민 의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EU 기금을 사용하여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EU집행위원회는 EU구조투자기금의 사용에 관한 UN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유럽 연합이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기금이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의 재개발이나 확장에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EU구조투자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 위반 시 유럽 연합이 지급을 중단, 철회 및 회수할 것을 권고한다.

데이터 수집

이 연구는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확립된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EU의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응답자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의 규모, 형태,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이 해당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제약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데이터가 없으면 서비스 공급자는 장애아동의 요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해 장애아동들을 간과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폭력 정보는 수집하지만 연령에 따라 필터링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아동에 대한 폭력 데이터는 수집하지만 아동의 장애 상태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수집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정부의 정보도 마찬가지다.

응답자들은 장애아동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증거 기반 개혁과 표적화된 조치를 촉발하기 위해 모든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 정보 및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FRA 견해 ■

국제법 의무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세분화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아동 폭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데이터가 적절히 세분화되고 접근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에는 최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신고 사례와 수사, 기소 및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차별 또는 편견 유무를 포함한 폭력 유형/ 가해자/ 다중 또는 심각한 장애를 포함한 장애 유형/ 성별, 이주자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기타 피해자 특징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위기상황 핫라인 운영, 아동 헬프라인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해야 한다.

회원국은 장애인 조직과 피해자 지원 조직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 및 시민 사회 단체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나열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또는 인식 제고 자료와 같은 기존 도구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회원국은 FRA의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정책과 조치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가 가능한 기본권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현황과 예방 방안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현황과 예방 방안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울다 대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어 위험에 처할 상황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정은, 구정아, 2019; 이혜영, 신현기, 2020; Nettelbeck & Wilson, 2002; Sullivan & Knutson, 2000).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장애학생이 학대나 방임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다고 확인되고 있다(이정은, 구정아, 2019; 이혜영, 신현기, 2020; Cappadocia, Weiss, & Pelper, 2012).

국립특수교육원(2014)에 따르면, 장애학생 43,955명 중 장애학생 5,059명(11.5%)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소속된 장애학생 492명(4.3%),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 3,574명(14.1%),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 993명(13.7%)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 특수학교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경북 00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쓰러진 후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와 사회복지요원의 체벌 폭행 의심이 제기되었다. 장애학생의 아버지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 해당 교사 및 사회복지요원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학교 폭력 사례 중에서도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피해자인 장애학생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요원이 장애학생 지원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것이며, 사립 특수학교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은 광주 00특수학교 사건 이후로도

경기 00특수학교, 경기 00특수학교, 서울 00특수학교, 강원 00특수학교, 서울 00특수학교, 세종 00특수학교 등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 폭력 사례의 특징은 특수학교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피해자인 장애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에서의 학교 폭력도 증가 추세이다. 2020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부, 2021)에 따르면, 장애학생 전체 95,420명 중 68,805명(72%)이 일반학교에서 전일제 및 시간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피해자는 2014년 초등학교 21명, 중학생 77명, 고등학생 49명 등 총 147명이었다. 반면 2018년에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생 297명, 고등학생 207명 등 총 688명이 피해를 입어 2014년 대비 2018년에 4.6배가 증가한 수치다(강민정 의원실, 2021).

이창훈, 권요한(2015)에 따르면, 통합학급 일반교사(397명)가 인식하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금품갈취, 성추행,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일반교사가 3가지 중복 선정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언어적 놀림 등의 언어폭력이 31.3%(356명)로 가장 많았다. 왕따, 은따 등 집단 따돌림도 23.5%(27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적 폭행 등 신체폭력도 18.0%(205명)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 방과 후 활동시간, 등학교 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귀가 후 늦은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1월부터 2019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장애학생 학교폭력 관련 연구 34편 분석에 따르면, 초·중·고 시기 장애학생 학교폭력을 다루는 논문은 23.5%(8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학교 폭력 예방 방안을 다루는 법과 정책을 다룬 논문은 7.3%(3편)에 불과하다(이미지, 안예지, 김은삼, 2020). 이처럼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초·중·고 전 시기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 예방 방안을 다루는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여 정부는 지난 2013년에는 학교폭력을 4대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예,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고화질 CCTV 설치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이경민, 박경옥, 2020).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Wee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 문제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이 발생해도 Wee센터 내에 장애학생 전담 상담 인력이 없어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장애인교육아올다, 2021). 또한 특수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계속 발생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202곳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이혜영, 신현기, 2020).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2020)에 따르면 장애학생인권지원단으로 8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단지 사건이 많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창훈, 권요한(2015)에 따르면, 장애학생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개인 속성요인으로 학업성취, 반항, 피해신고, 위생, 외모, 지능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행동 요인으로 과잉행동, 학업방해,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반면 외부요인으로는 가정요인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무관심, 가정 폭력 등과 관련이 있고, 학교요인은 학교 규칙, 교사지시 등과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경쟁사회, 여가활동 등과 관련이 있고, 관계요인은 또래관계, 또래지지, 교사친밀, 보호기관 등과 관련이 있고 문화요인은 과잉보호, 유해환경, 대중매체 등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한편 유·초·중·고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이혜영, 신현기, 2020). 장애학생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과목과 수업 시간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혜영, 신현기, 2020). 실제로 교사들은 장애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업 시간을 채우느라 장애학생을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27조 상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학생수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영아 2명, 유치원 3명, 초등 4명, 중등 5명으로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선정 및 배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기관 배치가 아니라 집 근처 학교나

부모 의견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배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일반학교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 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증의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경우 신변처리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이 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이 다른 교사나 특수교육보조인력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특수교사나 특수교육보조인력은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고,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이 침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장애인교육아올다, 2021).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와 별개의 교육권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장애학생 선정·배치,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정, 신변처리 지원 등은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교육부, 2020)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중앙장애학생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연수, 인권상담 초기 접수·즉시 개입·중재,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학교 폭력 예방 방안 연구 등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장·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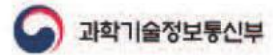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 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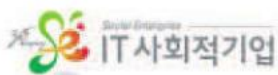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학교 가는 길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

제25회
인화인정영화제 개막작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언급

17년을 기다린
가장 특별한 등교

본片和聲-세바시 임근우 감독이 17년 만에 돌아온 영화이다. 17년 뒤 돌아온 세바시 임근우 감독의 영화이다.
본片和聲-세바시 임근우 감독이 17년 만에 돌아온 영화이다. 17년 뒤 돌아온 세바시 임근우 감독의 영화이다.
본片和聲-세바시 임근우 감독이 17년 만에 돌아온 영화이다. 17년 뒤 돌아온 세바시 임근우 감독의 영화이다.

2021.05.05
14시 상영



17년만에 세워진 특수학교 이야기

김정인 감독의 <학교가는 길>

류미례 영화감독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절반은 매일 왕복 1~4시간 거리를 통학하며 전쟁 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공립특수학교 서진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서울시내 특수학교로는 2002년 경운학교 이후 17년 만의 개교였습니다. 2013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이 설립을 예고한 지 6년 만의 일이었고 그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진학교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이라도 무릎 꿇은 엄마들의 사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른바 님비현상이라 불리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지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모들의 슬한 눈물과 호소가 있었고 현실의 흘러가는 장면들을 다시 곱씹어보게 만드는 예술가들은 영화 <학교가는 길>과 연극 <생활풍경>을 통해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김정인 감독의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 제25회 인천인권영화제 개막작,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언급 등 영화제들을 통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5일, 극장개봉을 통해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마을 분들이 극장대관 상영을 진행한 덕분에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새벽 등교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학교가 왕복 3시간 거리에 있기에 수업시간인 9시에 늦지 않으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학교버스에 타서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이 영화에는 주로 엄마들이 등장합니다. 엄마들은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자녀들과 함께 주말농장에 가고, 산책을 하고, 수제 비누를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잘했어!”입니다. 사소해보이는 성취들을 환한 웃음과 “잘했어!”라는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해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

인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이은자 씨와 딸 지현 씨가 함께 감자전을 부치는 장면은 특별히 감동적입니다.

엄마의 지도에 따라 지현 씨는 껍질을 벗긴 감자를 썰고 믹서기에 가는 일을 합니다. 팬에 부쳐서 먹음직스런 감자전이 만들어지고 나면 무표정한 얼굴로 엄마를 놀리며 혼자 감자전을 맛있게 먹습니다. 은자 씨가 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카메라는 감자전을 찢는 지현 씨의 젓가락을 비추고…… “오~ 지현이 젓가락질 잘한다”라는 탄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그 목소리가 2005년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5년 6월 21일. 그 날은 지현 씨가 처음 젓가락을 잡은 역사적인 날이었고 화면 속 엄마는 “나중에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요?”라고 발랄하게 설명합니다. 지현 씨를 안고 놀이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아이의 표정이 어땠냐고 묻고, 두 살이 됐는데 말도 못한다면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말하는, 옛날 화면 속 엄마 은자 씨의 모습은 모두 지현 씨의 장애를 알기 전의 것들입니다. “언니처럼 똑똑해져!”라는 희망사항을 마지막으로 곧 현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지현 씨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지현 씨의 성장이 보였다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성장을 해온, “이제는 누구하고도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지현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현재의 목소리까지 지현 씨와 은자 씨의 평생의 사연이 3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은자 씨는 지현 씨의 현재를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쇼 하지 말라고 비아냥 댈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던 서울지부 대표 김남연 씨는 나중에 “앉아있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서진학교는 문을 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부모들이 싸워왔던 이유가 단지 내 자식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님을 영화는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반대주민들이 뜻을 접은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향후 통폐합 학교 발생시 해당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최우선 건립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찌 살까를 걱정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보겠다며 싸워온 것이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한 약속 때문에 서진학교 싸움은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며 한탄합니다. 은자 씨는 외칩니다. “언제까지 특수학교를 지어주는 대가로 뭔가를 제공해야 합니까? 왜 특수학교를 특수하게만 바라보니까?”라고요.

서초구에서는 특수학교를 짓는 대가로 주민들이 땅의 등급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중랑구에서는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영화의 주인공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가까운 미래 때문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누군가를 위한 싸움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만나 함께 살아오면서 변화가는 과정을 2시간이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축복입니다.

최근 들어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미, 제주, 전북, 인천의 특수학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대전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해서 경찰과 교육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모두 올해 발생한 일들입니다.

눈물 흘리고 무릎 꿇어가며 마침내 특수학교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보고 나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 특수학교 폭행사건들이 보입니다. 특수학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렇게 세상은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절망하지도 쉽게 낙관하지도 말아야겠지요. 세상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긴 시간을 기록한 감독 덕분에 우리는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상영관을 찾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뜻을 모아 대관상영을 신청해보시면 어떨까요? 영화의 감동과 가치를 10분의 1도 담지 못하는 이 글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온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17년만에 세워진 특수학교 이야기

〈학교가는 길〉

감독 : 김정인

문의 : 영화사 진진 02-3672-0113

